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소음의 정의에 반려동물 소음 추가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5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소음의 정의에 반려동물 소음 추가 .....       | 2 |
| 2.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가 ..... | 9 |

## I. 제안경위

2026년 1월 14일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조정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조정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현행법 제2조는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현행법상 소음의 정의 ]

####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또한, 현행법 제21조의2<sup>2)</sup>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sup>3)</sup>을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sup>4)</sup>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

- 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층간소음의 구분                 |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
|                          |                | 주간<br>(06:00 ~ 22:00) | 야간<br>(22:00 ~ 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br>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br>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 4)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생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소음의 정의에 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리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반려동물의 소리는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sup>5)</sup>으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의 소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층간소음 분쟁의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sup>6)</sup>

####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 층간소음 대상                                                                                                                                                      | 층간소음 대상 제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거나 뛰는 소리</li> <li>- 문 여닫는 소리</li> <li>-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li> <li>- 망치소리</li> <li>- TV, 라디오, 악기, 음향기기 소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li> <li>- 동물소리(개 짖는소리 등)</li> <li>-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li> <li>-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li> <li>-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li> </ul>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소음의 정의에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포함하여, 반려동물의 소리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층간소음 분쟁의 처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들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인터넷접수된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총 47건이며, 해당 신청은 모두 신청반려 되었음

6)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2022.10)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과거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국민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소음 제재기준 마련을 권고<sup>7)</sup>한 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반려동물 소음은 발생 양상이 불규칙하고 일시적이어서 현행 층간소음 기준과 같은 적정한 기준 설정과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국민권익위원회, 2022)

#### □ 반려동물 소음기준 부재에 따른 조정 불가

- 소음·진동관리법 상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되어 있어 반려견 등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효과적인 제재 어려움
  - 동물보호법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상해 발생, 안전조치 미준수 등에 따른 제재만 규정할 뿐, 반려동물 소음관리 기준이 없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어도 해결을 위한 조정기관은 부재

##### < 주요 사례 >

- ◆ 사람잡는 개소리 ‘충견소음’ 갈등 폭탄……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등 강아지와 같이 사는 이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충견(犬)소음’ 갈등이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대전 빌라에 사는 김모씨는 1년 넘게 윗집 강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윗집 사람은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화가 남 (언론보도, '22.5.)
- ◆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접수하였으나 반려견의 뛰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이의를 제기. 새벽 2시까지 반려견 뛰는 소리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지 벌써 몇 개월째인데, 층간소음에도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다고 함. (국민신문고, '21.8.)

실제 개 짖는 소리는 약 31dB(A) 수준으로 현행 공기전달소음 주간 기준인 45dB(A)에 크게 미달<sup>8)</sup>하므로, 과학적 측정 기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단속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사람의 활동이나 기계·기구·시설, 물체의 사용 등 관리가 가능한 소음원과 달리, 생물학적 본능에 따른 소리를 법적 규제 대상으로 명문화할 경우, 이웃 간 이해와 중재보다는 법적 처벌에 의존하는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과태료 등 사법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성대 수술이나 강압적인 교정 방식은 「동물보호법」<sup>9)</sup>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규제보다는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문화 조성 등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의 중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강화나 「동물보호법」상 소유자의 관리 의무 구체화 등 다양한 대안으로 권익위까지 지적인 소음 갈등 해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8) 현행 층간소음 기준 중 공기전달소음(TV, 음향기기 등)에는 5분 등가소음도(주간 45dB(A), 야간 40dB(A))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 짖는 소음은 31 dB(A) 수준임('22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측정자료 샘플 분석결과)

\* 5분 등가소음도 : 5분동안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 그 전체 에너지 총량을 시간으로 나눈 평균치

9)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규제 위주의 접근보다는 소유자에 대한 관리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충청북도 제천시 등 지방자치단체<sup>10)</sup>에서는 층간소음과 동물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부서가 달라 반려동물 소음 신고시 행정권한의 중복·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10) (의견제출 기관)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중구), 충청북도(제천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경상북도(구미시, 청송군)

## 2.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생략)                                                                                                         |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br>-----<br>-----<br>-----<br>---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br>-----<br>-----. |
| <신 설>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 <신 설>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 <신 설>                                                                                                                           |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1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음.

###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태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2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층간소음의 구분              |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
|                       |                | 주간<br>(06:00 ~ 22:00) | 야간<br>(22:00 ~ 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법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받고 직접 현장 방문상담 또는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공동주택 및 비공동주택 중 시범사업 지역(광주광역시 및 수도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025년 기준 32,662건임.

####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민원 접수 및 소음 측정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
| 신청       | 42,250 | 46,596 | 40,393 | 36,435 | 33,027 | <u>32,662</u> | 231,363 |
| 실제 소음 측정 | 183    | 391    | 458    | 376    | 468    | 455           | 2,331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지난 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102,124건 중 실제 소음 측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1,299건(12.7%)으로, 소음 측정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층간소음 상담·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상담·조정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가 있음.

다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11)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지역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업무 주체로 하기보다, 이미 구축된 현행법상 관리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11)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 현행법상 층간소음 조사·상담 업무 체계 ]

| 주체       | 수행                         | 근거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b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
|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토지주택공사<br>(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
| 지방자치단체   | 광주·세종·울산<br>(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  |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 방지 조사 및 상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근거한 지원 센터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 여건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층간소음 업무가 추가될 경우 행정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층간소음 관리를 일원화하고 전문기관의 상담·조정 인력 확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6